

닭의 법정전염병

근절대책과 문제점



김재홍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법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병 인체가 옮기는 전염병으로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성이며, 가축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전염병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피해의 강도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으로 정하고

있다.

닭의 전염병 중에서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는 뉴캐슬병, 가금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추백리,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이 있으며,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는 닭 마이코플라즈마병과 닭 뇌척수염이 포함된다.

원래 이 법의 목적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즉, 발생농장의 각종 계산물을 소각 또는 매몰하고 농장출입을 폐쇄하여 병계나 계란 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법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농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인수공통 전염병의 경우 이 병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다.

그러므로 법정전염병 발생 양계장은 음으로 양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법정전염병의 발생사실을 숨기고 병계나 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다면, 나만이라도 살자는 생각이 결국 양계업 전체와 같이 죽자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결과는 꼬리를 물고 자기 양계장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양계인의 노력외에, 법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법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은 어떻게 되며, 대책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 이 점을 전제로 닭의 법정전염병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닭법정전염병 발생상황

뉴캐슬병(ND), 가금콜레라(FC), 가금인플루엔자(AI), 추백리,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의 1종 가축전염병 중 FC와 AI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

ND는 '87년말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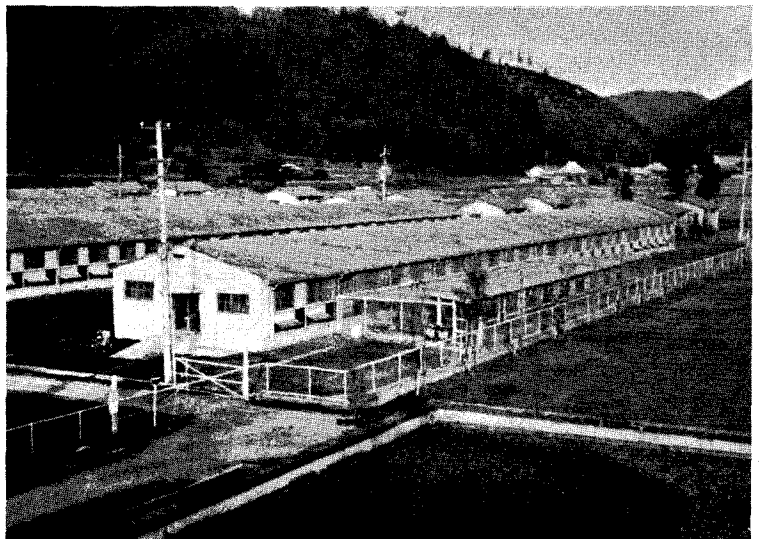
ILT 역시 지역과 농장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일원의 육계농장 일부에서 상재화되어 육추기에 한번씩 겪고 지나가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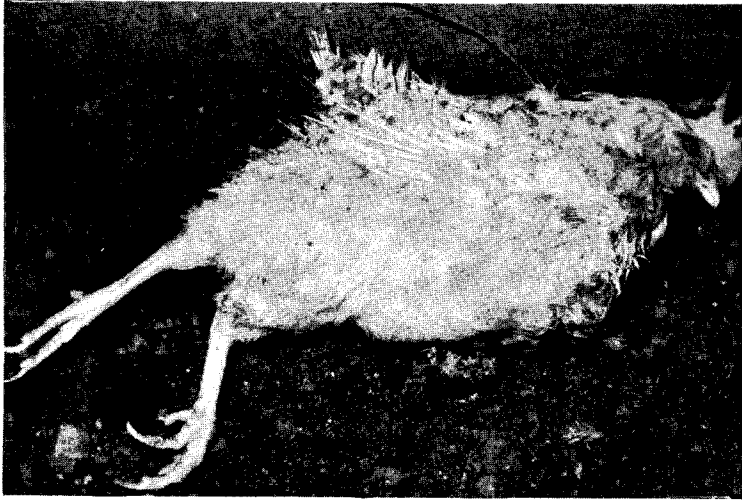
추백리는 80년대 들어 60~70년대처럼 심각한 발생에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종계에서 병아리로 난계대 전염되며 병아리에 대한 전염 및 폐사율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간주된다.

제2종 가축전염병인 닭 마이코플라즈마병과 닭너척수염(AE)의 경우, 전자는 만성 호흡기병 또는 씨알디(CRD)로도 불리우며, 전 계군의 80% 이상이 이 병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엄밀하게 말해 법정전염병으

로 분류하여 규제하기에는 너무 만연된 질병이지만, 난계대전염되며 알게 모르게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아직껏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종계장 수준에서는 이 병에 대한 양성제가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계에서도 일반양계장에 버금가는 수준의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율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병을 2종 가축전염병에 분류한 명분은 유명무실하다 할 것이다.

AE도 질병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난계대전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6주령 이하의 병아리에서는 신경증상,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종계에 대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체이행항체에 의해 병아리에서 발생하는 예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며, 일반





일단 법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자기 양계장에 발생하면 해당 시, 군, 읍, 면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 법정전염병으로 판명되면 축주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채란계에는 감염되더라도 약간의 산란저하 외에는 큰 피해가 없는 질병이다.

2. 법정전염병 발생시 취할 조치사항

일단 법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자기 양계장에 발생하면 해당 시, 군, 읍, 면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법정전염병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엔 축주는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진단을 한 사람이 신고의 의무를 지게 된다.

법정전염병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양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양계장의 산물의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병계군을 도태시켜 소각이나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정전염병이 특정지역내에 만연되었을 경우엔 경찰과 협동으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닭이나 계란, 양계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법정전염병이 다른 양계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가금콜레라나 IT에 걸린 닭은 장기간 보균계로 남아 새로 입식하는 신계에 대해 계속적인 전염원의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인 감염이 유지되어, 질병의 상재화로 인한 당해농장의 피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 질병을 전파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계는 몰래 유통시킬 것이 아니라 도태 처분함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조치이다. 병계의 유통경로는 다른 양

계농가에 있어서의 유통경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병계나 감염농장으로부터 나온 병인체가 다른 양계장의 사람이나 차량, 닭, 난좌 등에 옮겨 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뉴캐슬병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병계나 그 산물들이 사방으로 거리낌없이 유통됨으로써 뉴캐슬병이 전국의 양계장으로 퍼져 나가서 빚어진 결과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백신이 통용되고 있는 뉴캐슬병에 비해, 일반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가금인플루엔자가 만약 국내에 유입된다면 우리와 같은 인식과 방역체계 아래서는 양계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피해나 폐사율은 강독 내장형

(아시아형) 뉴캐슬병과 비슷하면 서 예방할 백신이 없다면, 뉴캐슬 병을 한번씩 당한 경험이 있는 양계가들은 그 사태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추백리에 있어서도 백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종계장이나 부화장이 추백리균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 곳에서 나온 병아리는 어디를 가나 추백리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미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며, 회복되더라도 보균계로 남아 계속적으로 다른 닭에 전염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병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조치로 난계대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에 대한 혈청(항체)검사를 철저히 하여 양성계를 색출, 도태시키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항균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각종 항균성 제제의 사료첨가나 항생제 크리닝 등에 의해 추백리의 발생이 월등히 줄었지만, 일단 추백리가 발생한 계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계군을 도태시켜야 한다. 항균제 치료시 다소간의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은 채 보균계로 남아 다른 계군에 계속 추백리균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서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조치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1종 전염병과 다를 바 없지만, 닭 마이코

플라즈마병 발생으로 인해 법적인 통제조치를 당했다는 양계장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모든 양계장이 통제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으므로 법정전염병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 축산물 수입개방과 법정 전염병

근래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축산물, 그중에서도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의 수입개방과 가금의 법정전염병과는 연관이 있을 것인가?

물론이다. 살아있는 가금류 뿐만 아니라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고기를 통해서도 법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수입개방이 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국제적인 여건상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차선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래성 질병유입과 식육에 대한 항생제나 유해물질의 잔류 등을 검사하여 안전에 대한 확인이 되었을 때 수입을 가능케 하는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의 질병예찰 및 검역체계 강화, 조기진단법 개발 계획 등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대책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4. 근본대책과 문제점

아무리 좋은 예방대책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가축전염병의 예방은 축주나 관리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훌륭한 법이나 제도, 기술은 사람이 지닌 허점과 맹점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은 엄격한 통제관리하에서 발생이 거의 줄어들면 박멸되지만 단계를 넘어 가야 한다. 발생하는 대로 그 계군이나 양계장의 닭들을 도태처분 후 당분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 첫번째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도태계군에 대한 보상대책이다. 이것이 마련되지 않고는 모든 박멸대책이 탁상공론일 뿐이다. 현재 소나 돼지에서는 이러한 보상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완벽한 보상은 안될지라도(전염병에 걸린 축주 자신의 책임도 상당히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수립되어야만 법정전염병의 악순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박멸되게 계획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보상책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양계인

스스로도 근래에 한창 논의되고 있는 자조금 제도 등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단계가 왔다. 자조금 제도의 도입, 이는 장래의 여러 불행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축산업 다방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법정전염병의 대책마련에 있어 고심하는 부분은 뉴캐슬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책이 없는 데서 기인되는 신고기피이다. 분명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음으로써 통계상의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홍보면

에서도 잘못된 현실인식을 던져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법정전염병에 대해 일선에서 대처할 가축위생시험소나 공수의 요원의 부족, 질병판정후 신속한 조치를 행해야 할 인력의 부족, 각 지역별로 신속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내축산업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모로 가도 십리만 가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학문에도 왕도가 없듯이

질병퇴치에도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금질병에 방에 관한 일차적으로 사람의 문제이며 이에 훌륭한 기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축산업의 방향이 정책결정화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좋은 교훈을 줍지도 하다.

각각의 닭 법정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러 지면을 통해 많이 언급되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양계**

하양유통

계란도매상담납품

대표 김근식

농 장 : 경북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789-14
(0541) 52-0830

사무실 :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 88-9
(053) 953-0045